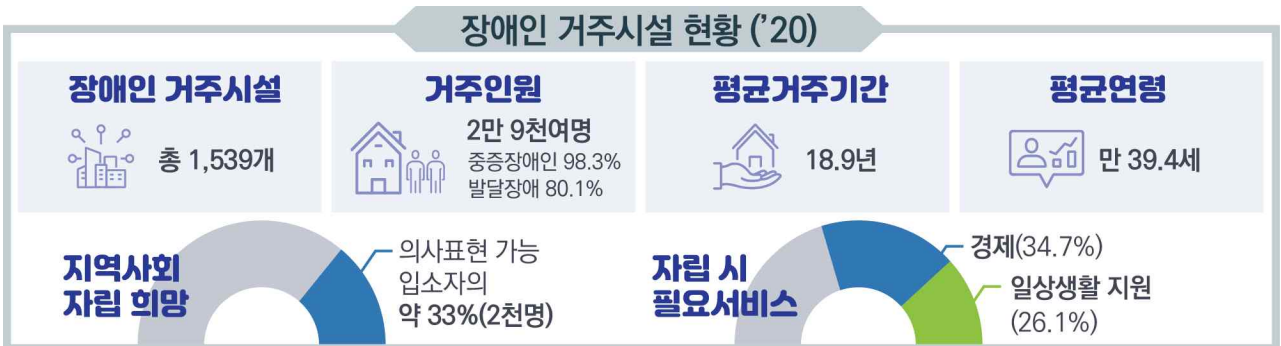

[안건 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요약본)

2021. 8. 2.

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
 - UN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 주거결정권 명시, 서구유럽은 '60년대부터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등 탈시설 지원 확산
- (국내 정책환경) 고령화, 1인가구화로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 증가 예상
 - * ('20년 실태조사) 65세 이상 장애인 49.9%(’17. 46.6%), 1인가구 장애인 27.2%(’17. 26.4%)
 - 대안으로 운영되어 온 거주시설보호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단생활과 통제,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한계
 - * 가족에 의한 원치않는 입소(47.5%, '17년 인권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문제,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등
 - '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을 추진 중이나 서비스 편차가 크고 지역간 연계가 어려운 한계



- 현 정부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생활환경 조성' 국정과제 채택
 - ①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 ②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③장애연금 인상('20) ④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 수립('18) 등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 그간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비전과 목표 제시 필요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여 현 정부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 마무리 추진

* ('17년 장애계 3대 요구)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란?

- ✓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 ✓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 ✓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Release),
지역사회 자립 촉진 위해 **시설을 변화**시키는(Reform) 일련의 지원정책

추진 원칙

지원대상

당사자의 주거결정권
지역사회 거주권리 우선
개인적 요건 선별 배제

탈시설 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와
복지서비스 결합

시설변환

전문서비스 기관 외 신규
설치 금지 및 이용기준 강화
이행기 시설 운영기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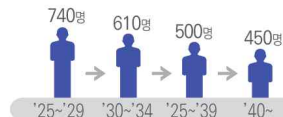
2022년~2024년

2025년~

2041년

- 시범사업 추진
- 법령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거주전환 지원



- 거주 전환 마무리
(시설거주 장애인은 24시간
요양·돌봄이 필요한
22백명 수준 예상)

대상별 지원 방향

시설거주 장애인

- 자발적 퇴소희망자(2천명)부터 단계적 거주전환 지원
- 자립지원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2만 4천명

공동 생활가정

- 공동생활가정 운영개편
⇒ 거주자 중심 주거환경 제공



2천9백여명

입소대기 장애인

- 주거·돌봄·의료 등 서비스 통합연계
⇒ 지역사회 내 생활지원



600명
+ 잠재수요자

1.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대상자 발굴) 시설장애인에 대해 매년 의무적 자립지원조사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지원대상 발굴(22~)
 - 주거선호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 따라 지역거주 우선지원
 - 단,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24시간 전문적서비스 필요성 등 고려
- (장애아동) 장애아동은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을 우선지원 하면서 성년이 되는 시설장애아동은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우선 지원
 - * 전문위탁가정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룹홈 운영 등
- (시설전환)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 거주전환 추진 지원(22~)
 - * 200인 이상 거주시설 2개소(충남보령 정심원, 경기도평 꽃동네), 100인이상 23개소

2. 단탄한 자립경로 구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 (자립의욕·역량 지원) 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자립생활지원기관과 '1:1결연' 등을 통해 정보공유·동료상담 등 교류확대(22~)
 - * 퇴소 전 준비과정 지원 및 퇴소 후 모니터링·상담 교육 등 지원
- (체험·훈련 기회 제공) 거주전환 이전 일상생활·사회활동 체험·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퇴소 전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 서비스 예측 가능성 제고(22~)
 - * (체험홈) 지역사회 이주 희망 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자체 등에서 5백여개소 운영 중
- (초기 집중지원)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 등을 통해 초기 정착 지원
 - 자립지원사를 통한 사례관리·주거유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건강검진비 등 지원 검토

3. 독립생활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거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의 5%(약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22년부터 시행)
- (일상생활지원)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모델 개발*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 바우처 사업 확대('22~)
 - * (주거유지서비스)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서비스 연계) 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 확대,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및 건강관리 등 빈틈없는 재가서비스 연계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건강관리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 발굴·양성 ● 후견법인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 장애인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 직접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건강관리 지원 확대('22~) ●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21~) ● 방문진료 별도행위 본인부담 경감('2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 대상 돌봄·양육지원 확대

재가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백 방지

4.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 (거주시설)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제외한 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설변환 모델 제시('21.下, 법령개정 추진)
 - 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지원주택 등을 제외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추진
 - ② 現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 변환
 - * ('20년, 전수조사) 스스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거나 자세변경 지원 등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및 성인 4,397명(성인 37백명, 아동 7백명), 전체 시설거주자의 18%

③ 희망 시설에 대해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 →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 지원

* (시설전환 컨설팅 사업, '21.下)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를 공모·선정, 3차년에 걸쳐 거주인, 종사자, 시설 전환 과정 컨설팅 지원, 단계적 확대

○ (단기·공동생활가정) 고유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 정비(~'24)

	운영 목적	한계	개선 방향
단기 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긴급 일시보호 필요 →단기주거서비스 제공	·이용장애인의 83.4%가 1년 이상 거주	·운영점검을 통한 기능 정상화 및 지역불균형 해소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대안적 주거	·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 거주인 자기결정 제약 등 경직성	·공동생활가정을 유형을 다양화→인력·운영기준 차등화

5.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 이용기준 강화) 사례회의를 통한 종합 판정방식으로 절차를 강화하면서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장애인으로 대상기준 강화('22~)

대상강화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	+	절차강화 지역사례회의(전문위원회)
---------------------------	---	-----------------------

○ (당사자 중심 운영) 시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본인에게 직접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독립 생활공간(unit) 단위로 인원·설비 등 규정(~'24)

○ (서비스 전문화) 시설유형·이용자 특성을(장애유형·생애주기 등)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 등 개선(~'24)

[거주시설 운영 방식 변화 방안]

재산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연금·수당 등 금전 직접관리 원칙 준수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형태로 시설생계비 본인 수령·관리
건물과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아파트 등 가정집 형태로 변경 ·1인 1실 형태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개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과 교류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장애정도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개정)

- (인권보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out' 도입 및 운영비 지원 중단 등 단호한 조치(~22)

		변경 전	변경 후		
시설 폐쇄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시설장 또는 시설종사자에 의해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폐쇄

6. 민간-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법제개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 추진('21.下)
 - * UN 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권리보장 관련 기본법안 마련.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 (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정비 및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21.8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 체계화
 - *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정책 지원 총괄
 - 관계부처 협의기구 운영(중앙) 및 지역 계획 수립(광역),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통합안내·연계(기초) 등 공공 연계·협력 체계 구축

◆ [단계적 추진] 시범사업 → 제도·인프라 정비 → 본격시행

- 향후 3년에 걸쳐 시범사업('22~'24년) 및 관련 규정개정·인프라 구축('23~'24) 등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
- ① (시범사업 1)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21년~)
 - 거주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있는 시설 4개소를 선정, 3차년에 걸쳐 전환 과정을 지원하여 향후 거주시설 전환 추진 모델 개발
- ② (시범사업 2)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22년~)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여 탈시설 전·후 연계하여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

[안건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

2021. 8. 2.

보건복지부

목 차

I. 추진배경	11
II. 현황 및 법 제개정 방향	12
III. 법안별 주요내용	14
1.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주요사항	14
2. 장애인복지법(안) 주요사항	18
IV. 추진일정	19
[참고] UN 장애인권리협약 주요내용	20

I. 추진배경

- 그동안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내·외 정책적 노력 추진
 - 인천전략*(13~22)을 통해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관계 주도
 - *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10년 이행을 위한 UNESCAP(UN아·태경제사회이사회)지역 장애 분야 개발 계획
 -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06),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08) 이후 국내 이행을 위한 다수의 법률* 제정
 - * 「장애인차별금지법」('07), 「발달장애인법」('14) 등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 '장애등급제 폐지'('19) 등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추진
- 현 정부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42-4)을 국정과제로 채택
 - 주거결정권 등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한 기본 권리를 포함한 법 제정 필요성 지속 제기
 - * 20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및 '장애인기본법(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 법제정방향 연구*, 전문가·장애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21.3~7) 등을 통해 권리보장법안 논의
 - * ('18) 법 제정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성신여대 이승기 교수)
 - ('19~'20) 법 제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의견 수렴 및 후속 연구 실시(한국장애인개발원)
- 올 하반기 **권리보장법안 마련 계획** 발표(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3)

⇒ 장애인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리성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과 방향성 제시

-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체계화 필요

II. 현황 및 법 제 · 개정 방향

1. 장애인 관련 법체계 현황

- △일상생활 지원, △소득보장, △고용보장, △차별금지를 주요영역으로 하여 다양한 장애인 관련 법률이 시행 중
 - (장애인 특정 법률) 장애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로써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10개, 기타 부처 소관 법률 8개 시행 중
 - (장애인 포함 법률) 특별히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법률로써 사회보장 관련 법률은 주로 보건복지부 소관

< 장애인 관련 법률 체계 >

적용대상	주요영역	법률명	소관
장애인 특정 법률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점자법,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소득보장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고용보장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 포함 법률	일상생활 지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도서관법 등			문화관광부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부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2. 제 · 개정 방향

- ◆ (권리보장법)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기본법 형식의 제정법 마련
 -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 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으로 구성
 - * 「장애인복지법」 외에 서비스, 소득, 권익옹호 등 영역별 개별법 정비 장기 추진 검토
- ◆ (장애인복지법)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던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를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
 -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책임 명확화

<법안 구성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의 권리와 권리의 실현	제2장 장애인 복지 지원
제3장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
제4장 장애인 권익옹호	제2절 근로
제5장 보칙	제3절 건강 및 재활
제6장 벌칙	제4절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제5절 지역사회 자립지원
	제6절 장애인 가족지원
	제3장 장애인서비스 제공 절차
	제4장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제5장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III. 법안별 주요내용

1.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주요내용

1 장애인 정의 확대

○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 개념을 반영,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기준에 따른 '개인의 손상'에서 '사회적 장벽'으로 확대

* (사회적 장애)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UN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사회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

- 사회적 장벽이란 사물, 제도, 관행, 관념 및 기타 일체의 것으로 사회의 다양한 물리적·제도적·관행적 장벽으로 규정

* (WHO의 다양한 장벽 개념) 구조물, 적절한 운송수단 부족, 시·청각 장애인 편의제공 부재, 지원기술 부족, 정책과 법령 부재, 부정적 인식, 참여와 기회 부족 등

<장애 모델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

의료적 모델	→	사회적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의 원인이 개인의 손상에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의 원인이 사회의 잘못된 관념, 제도 등에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의 개선 등 사회적 변화 필요
<p>◎ (사례1) 불편함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다층 건물을 이용할 때 경험하는 불편함의 원인은 신체적 손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다층 건물을 이용할 때 경험하는 불편함의 원인은 건물 내 계단만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p>◎ (사례2) 불편함의 해소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장애 학생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청력 손상 자체에 집중하여 신체적 기능 회복에 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장애 학생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로 배치,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막 제공 또는 시각화된 문제로 변경 등 환경 변화에 초점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범위 확대

- 5년 주기로 수립·시행 중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체계성·실효성 및 지역특성 반영,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 정책환경 분석, 필요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종합계획의 이행력 강화
 - * (現 종합계획 포함사항)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자체별 ‘장애인정책지역계획’ 수립 의무 신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현황>

구분	1차 ('98~'03)	2차 ('03~'07)	3차 ('08~'12)	4차 ('13~'17)	5차 ('18~'22)
목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실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세부과제	3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7대 분야 103개 세부과제	4대 분야 58개 세부과제	4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5대 분야 69개 세부과제
주요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비우치 도입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시범 사업	장애인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참여부처	3개 부처	5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現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상시운영·지원 체계 확보
 - * '00년 구성 이후 '21년까지 제22차 회의(대면 14회, 서면 8회) 진행
 - * 장애계는 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해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격상 요구 ('21.3.23,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건의사항)
 -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 처리, 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각 부처 간 장애인 정책 업무 연계 강화를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 설치*
 - * (유사사례) 사회보장위원회: 복지부에 사무국 설치(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소비자정책위원회: 공정위에 사무국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4조)

▶ (참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연혁

- ('89) 복지부 소속으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 ('96) '국민복지기본구상('96.2)' 및 훈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 ('99) 장애인복지법에 법적근거 마련 및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 ('07)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4 장애인영향평가 도입 검토

- 장애주류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 및 정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영향평가 도입 검토
 -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UN 총회에 제출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장애인영향평가제도 도입 독려
 - 주요 법령 및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
 - 평가 대상, 평가 도구 및 기준, 평가 지표, 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장애인영향평가 도입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

▶ (참고) 장애주류화 정책

- (개념) 설계, 시행, 평가, 자원 분배 등 정책 개발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WHO, 2011)
- (예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정보화 관련 법안(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반영, 국가조달제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매기준 마련, 국가자격증 시험과목 내 장애 관련 법안 포함(건축사 시험 과목 중 장애인등편의법을 시험 과목 중 하나로 포함) 등

5 장애인 권리 및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UN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보장 이념 및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적 기술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권, 참여권,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및 주거 방식 결정권 등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명문화
 -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안전대책 마련, 소득보장 등 각 주요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주거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보장

6 장애인 학대 대응방안 강화

- 장애인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강화
 - 장애인 학대에 대한 피해자 응급조치 및 학대 행위자 벌칙 등 구제 방안* 등 現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권리보장법으로 이관
 - * 장애인학대 범죄관련 신고의무 부과, 취업제한 조치 재발방지 지원, 보조인 선임 및 변호사 특례,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등
 -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 개입 및 반복적 학대발생 예방에 대한 적극적 행정적 조치 실시를 위해 시정명령 실시 근거 신설

7 장애인개발원 개편

- 現 장애인개발원*의 기능을 개별사업 중심에서 정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 * 정책지원 기능 수행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명칭 관련 논란 존재
 - 법령·제도·정책·사업 연구·평가·모니터링 등 정책지원 기능 수행
 - 출연기관화,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신설하여 기관 공공성 강화
 - * (유사사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2. 장애인복지법(안) 주요내용

1 복지 지원 대상 확대

-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및 급여를 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으로 제한함을 원칙적으로 규정
 - 다만,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
 - * (예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령과는 별도의 장애 종류 및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장애인 등록을 요하지 않음

2 개인별지원계획 도입

- '장애인등록 - 서비스 신청 - 종합조사 - 사례관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 체계적 지원 절차를 위한 규정 마련
 - 개별조항 또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서비스 제공 절차의 총괄 규정을 별도 章(제3장 장애인서비스 제공절차)으로 구분·정리
 - * (예시)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법」, 주간·방과후활동 → 「발달장애인법」
 -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결과 및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의무 규정 신설

3 장애인시설 명칭 변경

-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설기능 개편,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 강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 명칭을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
 - 시설 기능을 이용자 관리 중심 → 지역사회로의 자립지원 서비스 (예: 주거유지서비스 등) 제공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성 제시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 마련

<명칭 변경(안)>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1. 장애인 거주시설	1.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규정 신설

- ①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의 ‘주거의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수립·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규정
 - 시설장애인에 대해 정기적인 자립 욕구조사 결과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 등 거주시설 퇴소지원 대상 선정
 - 초기상담·정보제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퇴소지원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이행
 - 주택 및 주거서비스, 이주 지원 등 초기 정착 지원, 활동지원·건강관리 등 지역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 ② 탈시설 장애인 지원기관 운영 근거 명시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등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중앙·지방 기관 운영 근거 명시
- ③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 전문서비스 지원기관·지원 주택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시설 개소 금지

IV. 추진일정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추진방안 확정(‘21.8월)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국회 발의(‘21.하)

- (경과) UN 총회에서 채택('06.12.31), 국회 비준('08.12.2)
- (내용)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
 -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과 장애인 권익보호의 평가를 위한 국가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조 항	규정 내용
1~4조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5~33조	평등과 차별금지, 장애아동, 인식제고, 접근성, 생명권,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법 앞에서의 평등, 사법적 접근권, 개인의 자유와 안전, 고문으로부터 자유, 학대로부터 자유, 개인의 존엄성 보호,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 가정과 가족 존중, 교육, 건강, 재활, 근로, 적절한 삶, 정치와 공직생활 참여, 문화·스포츠 참여, 통계 수집, 국제협력, 모니터링
34~50조	장애인권리위원회, 당사국 보고, 보고서 심사, 당사국과 위원회와 관계, 위원회 보고서, 당사국 회의, 기탁, 서명, 지역통합기구, 발효, 유보, 개정, 협약의 폐기 등

- (비준 현황) 협약은 181개국에서 비준, 개인의 진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96개국에서 비준('19.12월 기준)

※ (우리나라) 협약에 대해서만 '08.12월 국회 비준 ('09.1월 발효)

- (우리나라 유보사항)

- 상법 조항과 충돌 우려가 있어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조항)은 **유보****

* (협약 제25조 e항)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 (유보 이유) 비준 당시, 심신박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전면적 허용으로 인해 이들을 보험금 목적 살해 또는 방치 위험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음

→ 국회 비준 이후, 「상법」 일부 개정(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일부허용)

별 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21. 8. 2.

보건복지부

순 서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정책 여건 분석	4
III. 기본 방향	16
IV.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20
V. 이행기 거주시설 변환	35
VI. 단계적 추진 방향	45
VII. 정책효과 예측	51
VIII. 과제별 추진일정	53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
 - 장애인의 기초생계 보장 및 종합 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는 집단생활과 통제,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한계
 - 유럽·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탈시설 정책 진행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08년 한국비준)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을 명시
 - * (장애인 권리협약 19조)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현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주요 성과>

정책 방향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			
대상·서비스 확대	자립기반 강화	건강권 보장	권익·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장애등록제 개편 • ('20) 부양의무자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장애인연금 인상 • ('19) 장애인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발달장애인 생애별 종합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확대) '17년 2조 778억원 → '21년 3조 6,783억원(77%↑) • (법령정비)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 <small>등급제 폐지</small> 장애인연금법 개정('20.1) <small>수급자 확대</small> 장애인건강권법('20.12) 개정 <small>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근거 마련</small> 			

- '19.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 * (장애등급제 개편) 종전 장애등급(1~6급) 폐지하고 중증-경증으로 단순화
 - ** (종합지원체제도입)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 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통해 서비스 종류 및 수준 결정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생계급여 지급('20~)
 - * 저소득 중증장애인 3.3만 가구 신규 발굴('21.5) 및 서비스 지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고*, 장애인 직접일자리를 매년 2,500개씩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 ('18) 월 25만원 → ('19) 생계의료 수급자 월 30만원 → ('20)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 월 30만원
 - ** ('19) 2만여명 → ('20) 2만2천여명 → ('21) 2만5천여명 → ('22) 2만7천5백명(목표)
-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 수립하여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9.3월) 및 방과후활동('19.9월) 서비스 도입,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16년 2개소→'19년 8개소) 추진
 - * ('20년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4,335명, 방과후활동서비스 4,123명 이용
- 그간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비전과 목표 제시 필요
-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19),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22) 이어 현 정부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 마무리 필요
 - * ('17년 장애계 3대 요구)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완전폐지

2. 논의 경과

① 장애계·학계 의견수렴 및 관련 연구 실시('18~'20)

- 11회에 걸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민관협의체' 운영('18.2월~'19.4월)
 - * 장애계(장총련·장차연 등 5인), 전문가(대구대 조한진 교수 등 5인), 보건복지부 12인 참여
- 주거·자립지원 방안('18), 장애가족 욕구조사('19), 거주시설 변환·통합돌봄 모델구축('20) 등 기초연구 실시

②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19.4월~)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시설 입소 예방 위한 주거·건강·돌봄 커뮤니티 케어 추진
 -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운영, 집중형 건강관리사업, 주택개조, 자립지원주택 운영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
 - * (사업지역 확대) '19년 2개 지역(대구남구·제주제주)→'21년 10개 지역으로 확대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실시('20.9월~'21.1월)

- 시설장애인 자립욕구 및 필요서비스 관련 거주시설 전수조사 실시
 - * 장애인거주시설 612개(그룹홈 제외) 및 시설 장애인 24,214명, 시설종사자 3,002명 대상 조사 실시

④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법령개정 논의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21.3월~7월)

- 분과회의*(4회) 및 총괄회의를(2회) 통해 이견 조율 및 추진방향 협의
 - * (3.16, 1차) 전수조사·통합돌봄 선도사업 공유, (4.16, 2차) 로드맵 주요쟁점 논의 (5.7, 3차) 서비스 확대 방안, (6.15, 4차) 로드맵 기본방향

II. 정책 여건 분석

1. 정책 환경 변화

① (인구·가구 구조) 고령화·핵가족화 → 가족 돌봄 부담 증가

- 장애인들은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가길 요구
- 지원법률 제정 및 관련 예산 확대('12. 8천5백억→'21. 3조7천억원) 등 장애인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가족 돌봄부담은 지속
 - * ('20.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의 주 도움제공자가 가족인 비율 76.9%('17년 81.9%)
- 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의 노령화, 1인가구화로 인해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
 - *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65세 이상 장애인 49.9%('17. 46.6%), 1인가구 장애인 27.2%('17. 26.4%)
 - ** '20년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도움제공자인 비율은 18.7%로 '17년 11.5%, '14년 11.1%에서 큰 폭으로 증가

② (시설거주 한계) 획일적 서비스·사회적 단절 → 환경변화 대응 미흡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 ('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기준 제시
- 장애인 개인의 욕구 변화, 재가 장애인 서비스 종류·대상 확대에도 폐쇄적 운영구조,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사회적 변화에 소극적 대응
 - * ('20년 전수조사) 시설거주 장애인 평균 입소기간 18.9년, 시설거주 장애인의 휴대폰 소유 16.3%, 보조기기 사용 24.2%

- '11년 시설 소규모화 추진('30인 이상 시설 신규개설 금지) 등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노후시설 중심으로 운영 중

* 30인 이상 시설 44.1%, 30년 이상 노후 시설 95개소(단기·그룹홈 제외)

○ 가족에 의한 원치않는 입소(47.5%, '17년 인권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 시설 내 코로나 19 확산 등 대규모 시설보호 지속 한계

* ('19, 장애인학대보고서)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거주지 32.8%, 장애인 거주시설 23.5% /
 학대피해자와의 관계: 시설종사자 23.1%, 지인 16.4%, 부모 11.6% 순

③ (정책 변화) 지자체 탈시설 정책 개별 추진 → 기본 방향 제시 필요

○ '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자체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추진 中

○ 지자체 여건 맞춰 자립주택·정착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크고 지역간 연계가 어려운 한계

[지자체 탈시설·자립지원 추진계획 현황]

	계획수립(목표인원)	지원기관	자립정착금*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13년~'17년(6백명) 2차 '18년~'22년(8백명)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서울시 복지재단 위탁)	13백만원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20년~'24년(3백명)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부산시 복지개발원 위탁)	7백만원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15년~'19년(1백명) 2차 '20년~'24년(2백명) 	-	10백만원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19년~'23년(48명) 	-	8백만원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17년~'22년(137명) 	-	8백만원

* ('21년) 울산·세종·충남 제외 전국 광역시도에서 자립지원금 지급 중(5백만원~13백만원)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 ①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② 시설의 획일적·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는 시설 변환
 ③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단계적 추진 필요

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현황

- 거주시설 소규모화·지자체 탈시설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수도 정체
- 인건비현실화 ·3교대 근무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전체 시설 종사자 수 및 지원 예산은 증가

□ '20년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1,539개, 거주인원은 2만9천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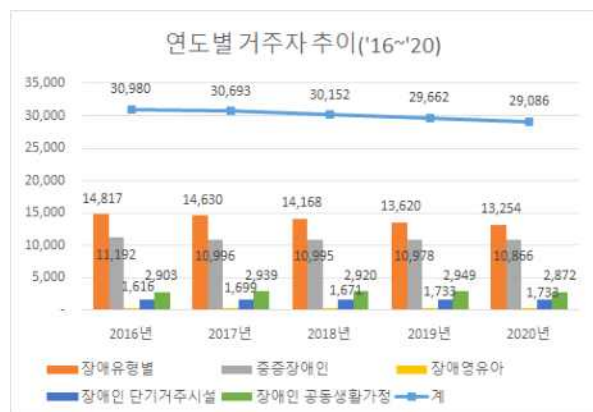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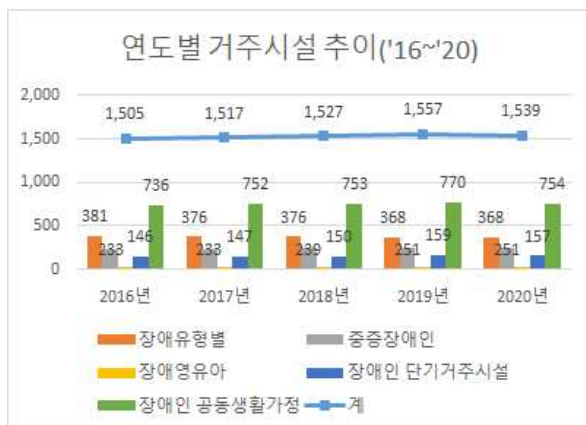
* 단기·공동생활가정 제외 시 거주시설 628개, 거주인원 24,481명

○ 최근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은 소폭 증가하다가 '20년 감소

- 단기·공동생활 가정, 중증장애인지원시설 중심으로 증가

* 증가 시설 유형: 중증장애(233→251개), 단기거주시설(146→157개), 공동생활가정(736→754개)

○ 거주인원은 지속적 감소추이, 특히 지적·지체·중증 장애인시설 거주자의 감소폭이 크며 단기거주시설 거주자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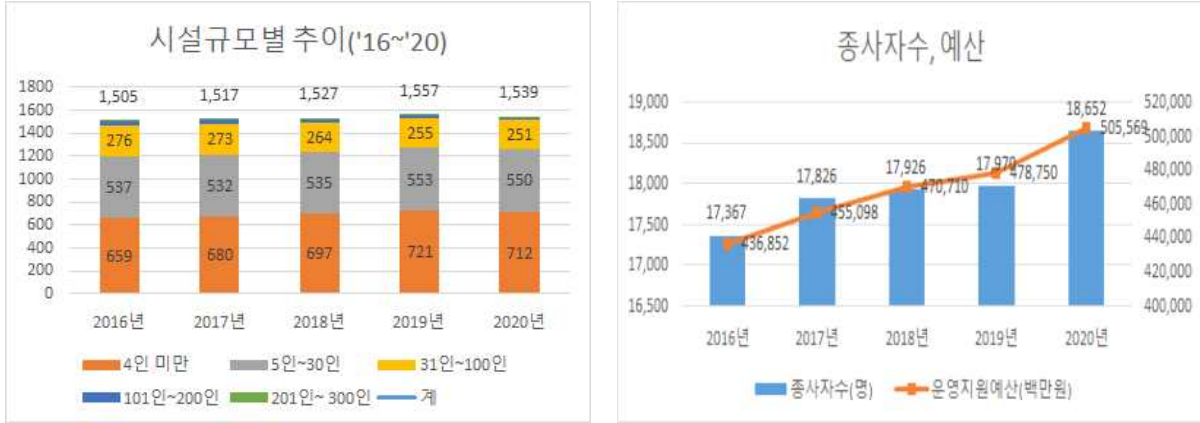


○ '11년, 30인 이상 시설 신규설치 금지 등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우선 정책에 따라, 30인 이하 및 공동생활가정 증가, 100인 이하 시설은 감소

* ('20년) 4인 미만(그룹홈) 46.3%, 5~30인 35.7%, 31~100인 16.3%, 101인 이상 1.7%

- 인건비 현실화·3교대 근무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지속 증가

* '20년 말 거주시설 종사자 18,652명, 시설운영비 5,056억원



* 단기·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예산 '05년도 지방이양

참고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20년)

1 전수조사 개요

- 기간 : 2020.9.7.~2021.1.29.(5개월)
- 대상·방법 : 장애인거주시설 612개(단기·그룹홈 제외) 및 시설 장애인 24,214명, 시설종사자 3,002명/대면·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주체/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주)한국궤립조사연구소

2 전수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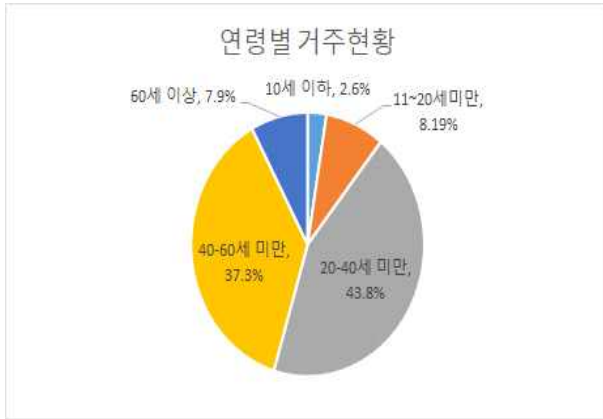
① 거주자 현황

- (구성) 남성 61.0%, 여성 39%, 거주자 평균연령 만 39.4세(영유아 제외)

* (연령분포) 20세~40세 미만이 전체의 81.1%로 대부분을 차지

○ (장애정도·유형) **중증장애 98.3%**, 경증 1.74%, **발달 장애 80.1%**

* (장애유형별) 지적(75.8%) > 뇌병변(9.2%) > 지체 (6.1%) 순



○ (입소기간·연고) **평균 입소기간 18.9년***, 무연고자 비율 **28%**, 수급자 83.2%

* (시설유형별) 지체(22.3년) > 중증(19.3년) > 지적(19년) > 청각언어(11.9년) > 영유아(6.4년) 순

○ (의사소통) 종사자 조사결과 **의사소통 가능 시설거주자 40.7%**, 실제 대면조사 시 본인응답 가능 **28.5%**(6,035명)

* (시설유형별) 시각(61.9%) > 청각(53.7%) > 지체(52.1%) > 지적(47.3%) > 중증(31.8%)

○ (약물복용·질환여부) 3개월 이상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88.6%**,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 69.2%**

* (질환종류) 정신질환(46.0%) > 뇌전증(27.7%) > 고저혈압(11.4%) > 갑상선(8.9%) > 당뇨(6.2%) 순

② 거주환경

○ (생활실 거주인원) 생활실당 **평균 거주인원 4.7명**

○ (신분증·금전관리) 시설직원이 신분증 관리 **66.6%**, 금전관리 **48.5%**

	시설직원	본인	본인과 시설직원	보호자
· 신분증 관리	66.6%	26%	-	1.7%
· 금전관리	48.9%	18%	27%	2.0%

○ (외출의 자유) 외출이 자유롭다 74.1%, 어렵다 25.5%

* (외출불가 사유) '혼자 나가기 어려워서' 62.5%, '시설에서 못나가게 해서' 16.3%

○ (휴대폰·보조기기 사용) 휴대폰 소유 16.3%, 보조기기 사용 24.2%

③ 거주자 탈시설 욕구 * 의사소통(본인응답)이 가능한 6,035명 대상 조사(전체의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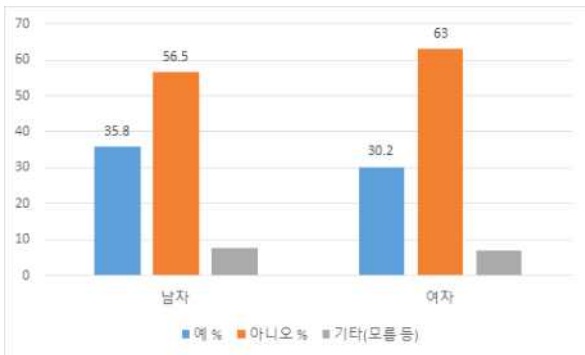
○ (탈시설 욕구)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 33.5%(2,021명), '그렇지 않다'는 59.2%

* (시설유형별) 영유아(66.7% 6명) > 시각(46%) > 청각(42.3%) > 지체(41.6%) > 지적 (33.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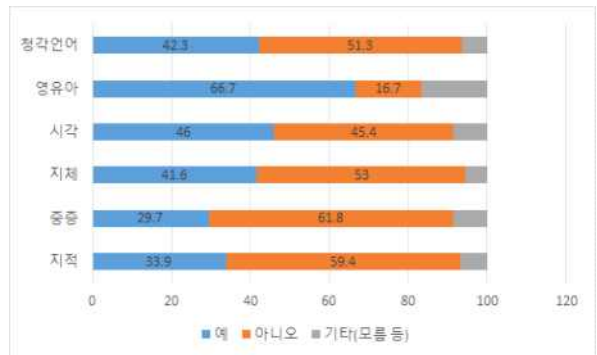
- 남성(35.8%), 시각장애(46%), 청소년(42.7%), 충청권(42.3%) 중심 탈시설 희망

< 탈시설 희망자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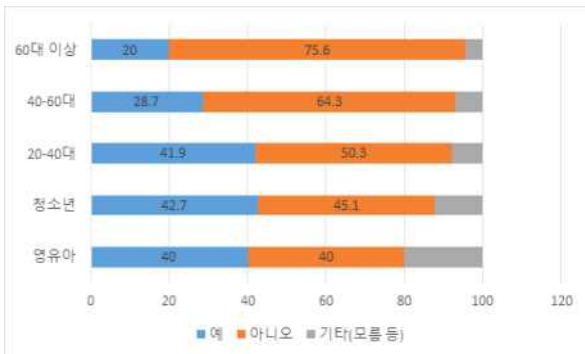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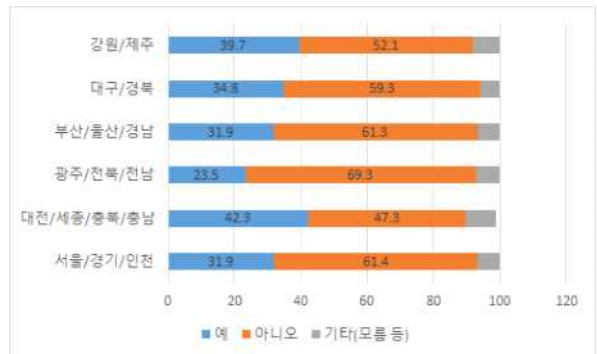
시설유형별



연령별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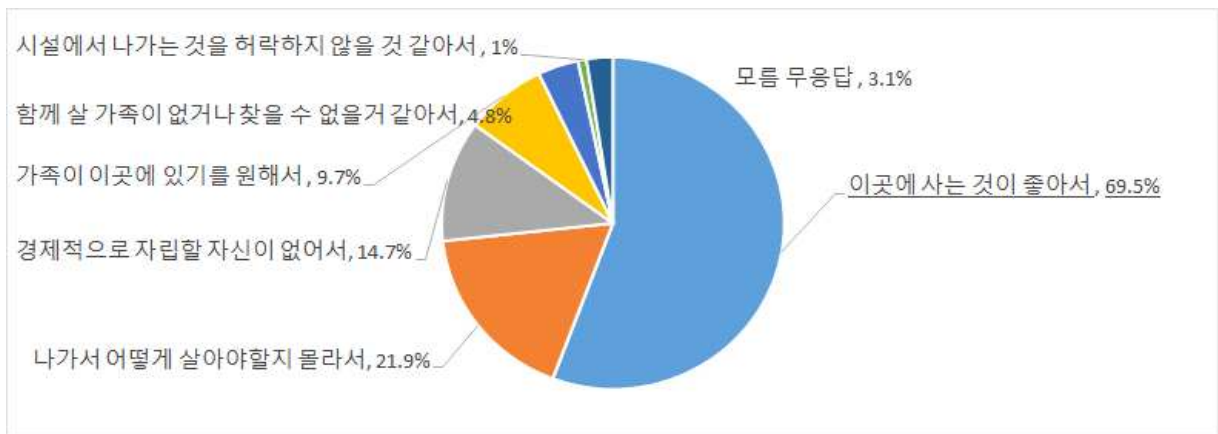


- (자립희망시기) '즉시·수개월 이내' 27.7%, '1년 이후' 28.3%, '모르겠다' 등 42.4%

- (자립 시 필요한 서비스) 경제적 지원(돈, 34.7%), 일상생활 지원(가사·활동 보조, 26.1%) 순

* 돈(34.7%) > 활동보조인·가사도우미 26.1% > 살 집 18.9% > 일자리 10.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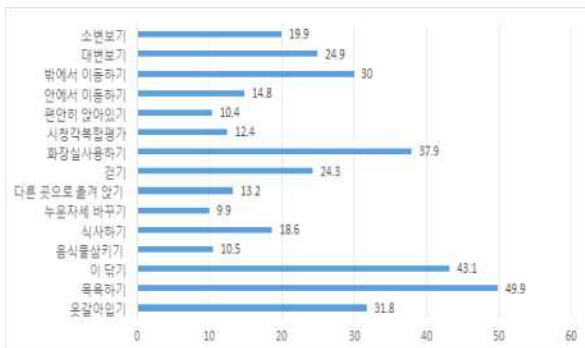
- (시설 거주 희망 사유)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 69.5%,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몰라서' 21.9%, '경제적 자립 자신없음' 14.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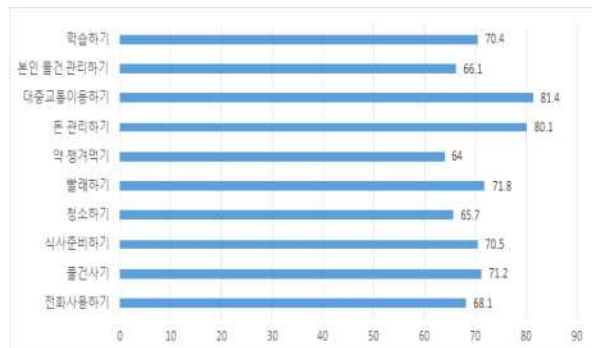
④ 거주자 서비스 필요도

- (일상생활생활 동작) 목욕하기(49.9%), 이닦기(43.1%), 화장실 사용(37.9%) 지원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지원 필요하며(64%~81.4%), 특히 돈관리하기·대중교통 이용 지원 필요

일상생활동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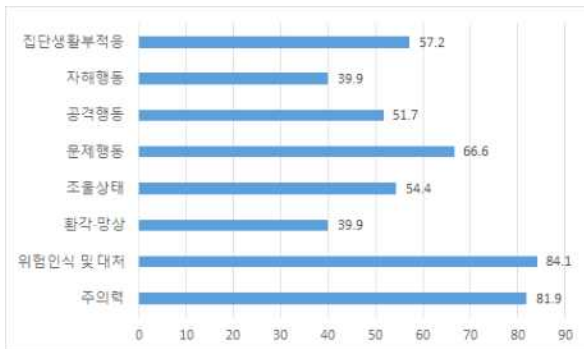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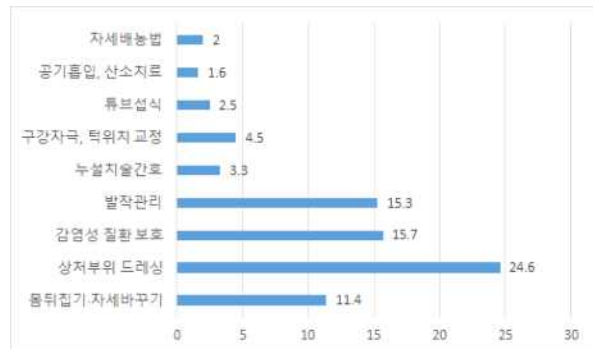


- (인지행동) 주의력과 위험인식 및 대처, 문제행동 항목의 지원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 (의료지원) 상처부위 드레싱에 대한 지원 필요가 가장 높으며(24.6%), 튜브섭식이 필요한 최종증 와상환자의 경우도 2.5%(약 530명) 나타남

인지행동특성 지원



의료지원



3. 해외 사례

- 30~40여년의 기간에 걸쳐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지속 추진
 -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초기 서비스법 제정 등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 확대를 거쳐 이행 중·후기 대규모 시설폐쇄 전략 수립
- 지역사회 거주공간과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소규모 그룹홈 형태의(6인~20인 이하) 거주서비스 제공

① 미국

- 거주시설 장애인 수 '60년대 정점에 이른 후 지속 감소
 - 16인 이상 대규모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수는 급격히 감소, 시설 장애인 중 6人以下 시설 거주비율이 '77년 8% → '17년 83%로 증가
 - * 주립거주시설: '77, 155천명→'17, 18천명 / 민간거주시설: '77, 53천명→'17, 18천명
- '99년 연방대법원 옴스테드 판결* 이후 주립거주시설 점진적 폐쇄·전환, 민간거주시설 지원 감축·중단 추진
 - * 지역사회 거주 희망 장애인에 거주시설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고립'에 의한 차별
- '07년부터 탈시설 노인·장애인에 탈시설 후 1년간 주거·일상생활 비용 지원, 예산절감 효과 강조(MFP 프로그램, Money Follows the Person)¹⁾
 - * 미국 MFP에 의한 탈시설 전후 서비스 월 비용 비교('17)

구분	노인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탈시설 이전 비용	\$8,079	\$7,759	\$13,469
탈시설 이후 비용	\$6,239	\$5,976	\$9,456
비용 차이	△\$1,840	△\$1,783	△\$4,013

1) 미국에서 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에게 메디케이드에서 제공되는 장기 서비스 및 서포트(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LTSS)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와 시설 기반의 서비스(Facility-Based Care)로 분류됨. HCBS 서비스에는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와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서비스인 Money Follow the Person이 포함됨

② 캐나다 온타리오주2)

- '70년대 장애인권리 및 인권의식이 향상, 시설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장애인 시설거주에 대한 인식 전환
 - * '70년대 주립 거주시설 16개소에 1만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거주, 초대형 거주시설이 (최대 거주인원 26백명 등) 운영되는 등 열악한 시설환경과 폐쇄적 운영으로 강제노역학대 문제 발생
- '74년 발달장애인 서비스법 제정, '77년부터 '86년까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 폐쇄 및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자립 5개년 계획* 시행

* (이주원칙) ①개인 선호의 존중, ②가족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 ③친구 및 다른 핵심 관계의 고려, ④개인의 발달 프로필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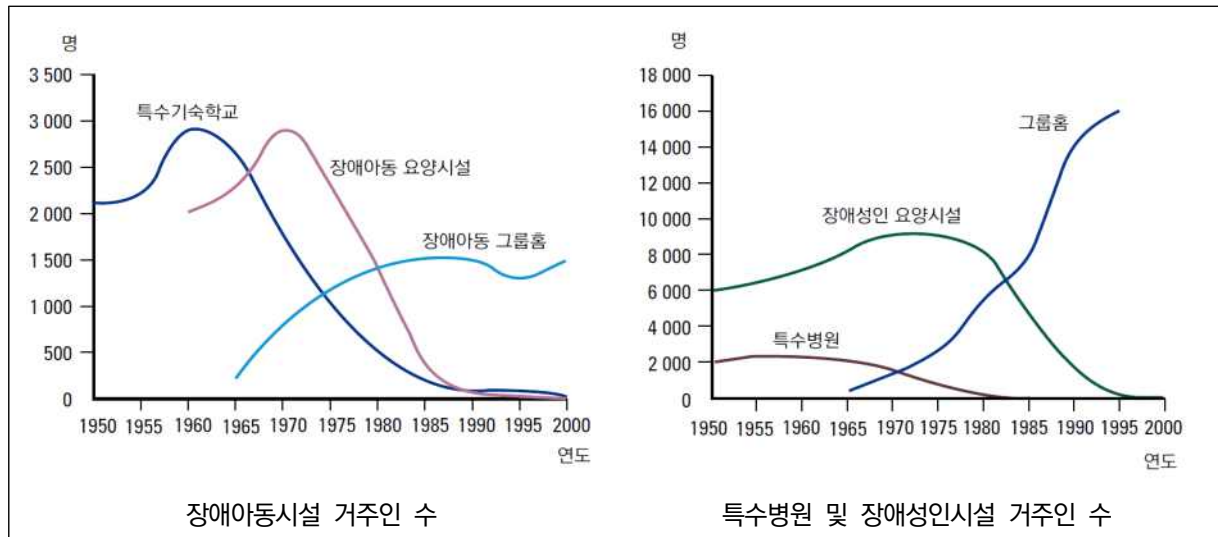
- '87년,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및 25년 내 주립시설 폐쇄 전략 수립, '87년~'04년 간 6천여명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 '09년 주립시설 폐쇄 완료, 거주시설 종사자 일자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점진적 시설폐쇄 진행으로 자연 퇴직 비율이 높았음
 - * (16개 주립 시설폐쇄 진행) '70년대 1개소 → '80년대 5개소 → '90년대 7개소 → '20년대 3개소

③ 스웨덴

- '60년대 발달장애인 14천명, 정신장애인 36천명이 시설 거주 → 인구대비 높은 비율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
- '85년 발달장애인법에 모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권리 명시*, '93년 장애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지역사회 생활지원 위한 국가의무 규정
 - * 지방정부에 시설폐쇄 이행계획 제출 의무 부과,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주의회에서 연 1회 시설거주인 거주유지 논의하도록 규정
- '97년 시설 폐쇄법을 제정*하여 '99년 말 모든 장애인 요양시설 폐쇄
 - * 'Act on the closure of special hospitals and nursing homes'(97)

2) 온타리오 주: 캐나다 10개 주 중 두 번째로 면적이 넓으며 가장 많은 인구 거주(1,350만명), 전체인구의 약 40%

[스웨덴의 시설 거주 장애인 규모 변화]



④ 영국

- '60년대 대형정신병원 중심 장애인 수용보호 문제 제기로 정신병원 폐원 계획 발표하였으나 시설 반대·퇴소거부 등으로 성과 한계
 - * 정신병원 수용 정원 61% 감소('80년 5만5천명→'93년 2만2천명)
- '90년대~'20년대 커뮤니티 케어 추진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확대·발전이 탈시설 지원서비스로 기능
 - '96년 커뮤니티 케어법(직접지불법) 제정을 통해 18~65세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스스로 이용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05년 개별예산제(individual budget) 도입을 통해 개인이 현금 또는 서비스직접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 보호 지속
 - '18년 잉글랜드의 장기 돌봄서비스(long-term social care) 이용 성인 발달장애인 13.1만명 중 2.4만명이 거주시설(케어홈, 너싱홈 등) 이용
 - * ('15) 26,350명 → ('16) 25,370명 → ('17) 24,875명 → ('18) 24,200명

[참고] 유럽연합 주요국의 30인 이상 대규모시설 운영 여부('20)

국가	아동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성인정신장애인	노인
독일	○	○	○	○	○
프랑스	○	○	○	○	○
스페인	○	○	○	○	○
핀란드	-	○	○	○	○
스웨덴	×	×	×	×	×

3)

5 일본

○ 일본의 탈시설 정책 시작은 2010년대로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음

- '60년대 유럽·미국 등은 탈시설화로 나아가고 있었으나, 일본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시설·정신과병원 설치 진행
- '06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시행하고, '장애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에서 그룹홈이나 독립생활로의 이행 목표를 제시하기 시작

* (장애인시설 거주인) '05년 14.6만명 → '18년 12.9만명 → '23년 12.6만명(목표)⁴⁾

○ '12년 장애자자립지원법을 개정하여(장애자종합지원법) 장애인 지역생활 이행지원 도입,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1:1 밀착지원 제공

* (누적 지역생활 이행자) '08년 14천명 → '18년 46천명 → '23년 55천명(목표)

[일본의 장애인 지역생활 이행지원('20.4월)]

<탈시설 준비기> 지역이행지원('12~)	<초기 정착기> 자립생활원조('18~)	<중기 정착기> 지역정착지원('12~)	<완료기>
·탈시설 계획수립, 서비스 및 주거체험, 서비스 연계 등 ·이용기간: 6개월 ·제공기관 267개, 이용자 457명	·정기적 방문연락으로 상담·정보제공·서비스 연계 ·이용기간: 1년 ·제공기관 203개, 이용자 922명	·상시 연락체계 구축, 수시방문 및 긴급 지원 ·이용기간: 1년 ·제공기관 540개, 이용자 3,526명	독립생활

3) Report o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based services in 27 EU member states(2020)

4) 제6기 장애복지계획(2021-2023), 일본 사회보장심의회장애자부회('20)

III. 기본 방향

1.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란?

- ✓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 ✓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 ✓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Release),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화시키는(Reform) 일련의 지원정책

2. 추진 원칙

① [지원대상] 당사자의 주거결정권 +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 고려
 - 시설장애인에 대해 매년 의무적 자립지원조사 실시 → 지원대상 정기 발굴
 - 주거선호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 따라 지역거주 우선지원, 단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24시간 전문적서비스 필요성 등 고려
 - 성년이 되는 장애아동은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우선 지원
- 중증여부·장애유형·자립 경험 유무 등 개인적 요건에 따른 선별 배제
 - 지체장애 우선 등 대상자 선별로 인한 차별 금지
- 인권침해 시설,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시설단위 거주전환 추진
 - 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one strike-out' 도입 등 단호한 조치와 대규모 집단거주 형태 지양

② [탈시설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 가능한 주거+복지 서비스 결합

- 시설 거주를 대체할 물리적 공간(주택) +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 후견지정·소득(일자리)·건강관리 등 독립생활 위한 서비스 연계·확대

③ [시설변환] 신규설치 금지·거주제한 + 과도기 거주시설 운영기준 개선

- 장애인복지법 개정하여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지원주택 등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신설 명시 검토
-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에 한해 전문주거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동작(ADL), 자해·타해 등 인지행동, 의료적 필요 등 **24시간 전문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한해 전문주거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 * ('20년, 전수조사) 스스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거나 자세변경 지원 등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및 성인 4,397명(성인 37백명, 아동 7백명), 전체 시설거주자의 18%
- **개별화·전문화된 서비스 지원, 거주자 중심 운영 및 지역사회와 교류 강화** 등을 위해 거주시설 운영기준 개선

④ [추진방식] 시범사업 → 제도·인프라 정비 → 본격시행 : 단계적 추진

- **향후 3년에 걸쳐 시범사업('22~'24년) 및 관련 규정개정·인프라 구축***('23~'24) 등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개정 및 고시·지침 개정 필요
- '25년 이후 연차별 탈시설 목표인원 산정 등 본격 추진

3. 정책 대상과 지원 방향

○ 단기·공동생활가정 외 거주시설 장애인 2만4천명

* 단기·공동생활가정 거주자 4천 6백명

- 이 중 자발적 퇴소희망자 2천명부터(미성년 480명)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거주전환 지원
- 매년 진행되는 개인별 자립지원조사, 인권침해 시설 등 시설단위 지역사회 전환을 통해 거주전환 지원대상 확대
- 그 외 시설거주희망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 변환을 통해 자립생활 강화

○ 공동생활가정 거주장애인 2천 9백명

- 공동생활가정 운영개편을 통해 거주자 중심 주거환경 제공

○ 거주시설 입소대기 장애인 6백여명* 및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등 시설입소 잠재 수요자

* '19.7.~'20.8. 시설 입소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미입소·대기 중인 장애인 625명

- 주거·돌봄·의료 등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생활 지원

거주시설에서 삶의 터전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지원

2025년~
연간 740여명
지역사회 거주지원

2041년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추진 원칙

- 대상**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지역사회 거주 권리
- 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 가능한 '주거+복지' 서비스 결합
- 방식** 단계적 추진: 시범사업→ 제도·인프라 정비→ 본격시행

지역사회 거주전환

① 개인·시설 단위 탈시설 지원대상 발굴·확대

-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조사·신청 제도 운영 → 개인지원대상 발굴
- ✓ 인권침해 시설·대규모 시설 → 시설단위 지역사회 전환
- ✓ 장애아동은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 가정형 보호 우선

②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자립경로 구축

- ✓ 시설 거주자 자립 의욕·역량 지원
- ✓ 지역사회 거주전환 초기 집중지원

③ 안심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확대

- ✓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
- ✓ 주거유지·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 ✓ 재가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백 방지

④ 공공·민간 전달체계 유기적 연계

- ✓ (민간) 중앙-광역단위 지원기관 설치 및 기초 전달체계 정비
- ✓ (공공)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 강화

이행기 거주시설 변환

① 과도기 자립촉진을 위한 거주시설 변환

- ✓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이용·재이용 강화
- ✓ 거주시설 단위 지역사회 전환 지원
- ✓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기능 정상화

②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인권 보장 중심 시설 운영

- ✓ 시설변환: 당사자 중심·지역개방·개별화된 지원
- ✓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IV.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과제 1 개인·시설 단위 탈시설 지원대상 발굴·확대

◇ 주기적인 거주자 자립지원조사, 시설단위 거주전환 등 탈시설 지원 대상 점진적 확대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조사·신청 제도 운영 → 개인지원대상 발굴

- 시설장애인 자립서비스 필요도 사정 체계 마련
 - 경제·신체건강·주거·돌봄·일자리 등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사정도구 개발
 - * '21년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도 평가도구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실시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연 1회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조사 실시 및 퇴소신청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주거의사 표현이 어려운 시설장애인도 지역사회 거주 우선 지원
 - 다만, 전문위원회를 통해 24시간 전문서비스 지원 필요성, 지역사회 거주에 따른 후견 지정 여부 등을 고려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인권침해 시설·대규모 시설 → 시설단위 지역사회 전환

- 20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2개소) 및 인권침해 시설은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및 시설 기능 전환 계획 수립 추진
 - * (200인 이상 시설) 충남 보령 정심원(235명), 경기 가평 꽃동네(207명)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전환 지원
 - 단계적으로 100인 이상 시설까지(23개소) 전환계획 수립 확대

- 인력 제한 등으로 자체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3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지역 내 타 서비스기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복지관 등) 연계 강화

* '51~100인' 시설, 시각·청각·지체 시설 중심으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多



* (자립지원서비스) 자립주택, 체험홈, 자립지원금, 그룹홈 연계 비율

◇ 장애아동은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 가정형 보호 우선

- '20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은(만 20세 이하) 약 26백여명으로* 전체의 10.8%에 해당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9개소, 만 6세 미만) 382명 등

**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중 장애아동은 약 10%(15백여명) 수준임('20)

- 장애아동의 정서적 안정, 발달 과정에서 개별적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요보호 장애아동은 가정형 돌봄이 우선되어야** 하나

- 전문위탁가정 발굴의 어려움, 위탁가정 지원부족 등으로 전체 가정위탁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은 약 2.5%에 불과

* '19년 전체 가정위탁 아동의(10,334명) 중 장애 아동은 약 2.5%(261명) 수준임

**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전문아동보호비 등 위탁가정지원사업 지방이양('05)

- 전문가정위탁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룹홈 운영 등을 통해 장애아동의 경우 집단 거주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 우선 지원

과제 2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자립경로 구축

2-1 시설 거주자 자립 의욕·역량 지원

◇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자립체험지원·지역참여 등 시설 장애인 자립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시설 내에 거주자 자립지원 전담조직 구성

- 거주시설에 '자립지원팀' 운영
 - 퇴소 전 준비과정 지원 및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회생활 참여 상담·교육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
 - 지역 내 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동료상담가가 파견근무 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거주시설-자립지원기관'(IL센터·장애인복지관 등) 간 '1:1 결연' 및 정기 합동프로그램 운영하여 자립생활 정보공유·동료상담 등 교류확대
 - * (서울시) 시설장애인 자립의지 고취 위해 'IL센터-거주시설' 지정연계 실시 중

◇ 체험홈 운영 및 서비스 종합조사 대상 확대

- (체험홈 지원) 지역사회 이주 희망 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시설 및 IL센터·지자체 등에서 체험홈 운영 중
 - * 체험홈 운영('20): 거주시설운영 142개 시설 276개소 / IL센터 운영 126개 센터 221개소, 그 외 지자체 운영 등
 - 낮은 탈시설 성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 방식* 등으로 거주 시설 체험홈 운영 한계 노정 → '18년도 이후 체험홈 신규설치 지원 중단
 - * 시설 내 문제행동 거주 장애인에 대한 분리 수단으로 활용 등

- 체험홈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운영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이전 중간단계로서 체험홈 기능 강화
- (서비스 종합조사) 시설 거주자가 지역사회 거주전환 시 지원받을 서비스를 예측하여 자립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퇴소전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장애인복지법(변경 전)	변경 후(안)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 (이하생략)	제00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다음 각 호의 서비스에 대한 신청 또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 기관 퇴소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u>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 (이하생략)

2-2 지역사회 거주전환 초기 집중지원

◇ 탈시설 초기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위해 집중 사례관리 지원 및 일시적 서비스 지원 확대

◇ 거주전환 초기 집중 사례관리

- (전담인력) 탈시설 장애인은 복합욕구를 가진 심층 사례관리 대상으로 시군구에 장애인 자립지원사를 배치 시범 지원 추진
- (역할) 시군구 통합돌봄팀과 협력하여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총괄 지원
 - 퇴소 전 종합적인 욕구평가-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서비스 직접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 경제적 지원 방안 정비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급·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마다 상이한 형태로 자립정착금 지급 중으로 지자체 재정·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 지급액 수준은 지자체 결정
 - * (21년) 울산·세종·충남 제외 전국 광역시도에서 자립지원금 지급 중(5백만원~13백만원)
 - 다만, 자립정착금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지급 절차·시기 및 탈시설 후 지역 간 이동 시 지급 기준 등 운영 표준화
- (퇴소아동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 *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자립수당 지원 등
 - ** (20년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만 18세 아동 253명 거주(만 18세 이하 전체아동 1,970명)

◇ 정착 초기 서비스 추가수요 고려 → 한시적 지원 강화

- (활동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초기 정착 및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 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 2개월) 제공 중
 -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해 6개월간 월 20시간 추가지원 중 (특별활동급여)
 - * (서울시) 퇴소 후 2년간 월 120시간 활동보조 추가지원 (20년 28억원, 누적 144명 지원)
- (건강검진 지원) 탈시설 장애인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를 위한 건강상태 분석을 위해 초기 건강검진 지원 추진(시범사업)

과제 3

안심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확대

3-1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 지원

◇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거계약없이 이주가능하도록 주거공급물량 확보

◇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

- 거주전환 희망 욕구조사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연차별 주거공간 확보방안 마련

[시설거주 장애인 장애유형에 따른 필요주거 유형(25천호)]

구분	일반주거	휠체어 사용	좌식생활	와상생활
호수	128백호	41백호	59백호	21백호

* 장애인 거주지시설 전수조사('20.9.7~'21.1.29,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하여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 수도권 8%, 비수도권 5%

- 또한, '22년부터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장애인에게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

* 복잡한 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공급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 '21~'25년까지 연평균 14만호 공급, '20년 15만호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5%(약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22년부터 시행)

◇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연계 협력사업 확대

-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주택 공급 등 지역 맞춤형 주거공급 사업 추진



▶ 주거+복지 연계 기획사업(국토부·복지부·국무조정실)

- ① **(테마형 매입임대사업)**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주체가 제안한 주거+복지 연계 등 테마형 임대주택을 건축 후 매입하고, 주거와 서비스가 연계된 임대주택 운영을 제안자에게 위탁
 - (사례)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 사회복지법인이 LH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재활병원, 재활체육센터 등 장애인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21.9월 착공 예정)
- ②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주거 및 실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
 - (사례) 평택 '늘찬돌봄센터' : 공공임대주택과 영유아·아동시설을 한 개 건물에 배치하여 복지시설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개조 등) 주거 내 생활제약을 제거,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개조 지원 및 장애유형별 독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추진(시범사업)

[보조기기 지원품목(안)]

		
전동 침대	미끄럼 방지 매트	특수 의자

3-2 주거유지·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 주거유지서비스 신규개발, 지역바우처 사업 확대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지원

- (개념) 거주전환 후 완전 독립 이전까지 주거관리·지역사회 참여 등 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모델 개발 추진

[주거유지서비스 유형]

유형	세부내용
① 주거유지	· 집 인식, 주거공간 안전, 생활관리 및 규칙 준수, 주거관리 및 유지, 공동주택 규칙준수, 임대계약 확인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신분증 관리, 수납정리, 의복관리, 식사계획 및 장보기, 음식물 조리 및 보관, 주방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냉난방기 사용 및 관리, 금전관리, 소비생활 지원, 비상대응, 응급의료지원 등
③ 사회참여 지원	· 쇼핑, 교통수단이용, 여가활동 계획 및 실행, 낯활동(직장) 기관 이용, 주민센터 이용, 의사소통기술,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등
④ 옹호 지원	· 자기의사에 의한 선택 지원, 선택과 책임, 자신과 타인의 권리, 옹호관련 기관 연계, 법률 및 구제지원 등

- (유형)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

- 거주시설,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복지관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정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형 다양화

제공기관	거주 시설	사회서비스원	IL센터·사회복지관 등
필요성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지역사회 안정적 지원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 일반거주지역과 분리된 곳에 소재한 시설 → 별도 지원기관 운영 필요	
운영사례	·(서울) 교남 소망의 집	·대구 남구	·(서울) 총현복지관 ·(대구) 사람자립생활지원센터

<공급기관 별 주거유지서비스 운영 사례>

□ (사례 1) 대구시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개요)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지원사업 운영('08년)
- (지원대상) 총 24명(중증장애인 24명) 단기체험 2명(시설거주인), 장기입주 22명
- (특이사항) 최중증 발달장애인(중복장애, 대구시립희망원 출신) 5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및 낮시간 활동 자원연계를 통한 자립생활지원
- (성과) 완전 시설 퇴소 및 자립생활주택 입주 : 22명 / 자립생활주택 → 지역사회 정착 : 53명
- (서비스) 자립 단계별 서비스 제공 유형('21년)

분류	단기체험	장기입주(탈시설)	퇴거지원
유형	자립생활주택(1개월이내)	자립생활주택 입주(2년~6년)	독립주거
인원	2명(동시 최대)	22명(현재 입주)	53명
규모	1개소	11개소	공공임대주택 등
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제공(시비지원) · 필수 ILP 및 개별욕구에 따른 체험활동 진행 · 동료지지자 지지활동 진행	· 필수 ILP 주1회, 개별 ILP 수시 진행 · 동료상담가를 통한 개인별목표설정 및 인권 모니터링 진행	· 퇴거자 대상 기획사업, 일정기간(3개월) 정착지원, 동료지지자 파견상담 등을 통해 퇴거지원

□ (사례 2) 서울시 '충현복지관'

- (개요) 재가장애인의 거주시설 유입예방과 지역사회 독립 지원을 위한 체험홈 운영 및 자가홈에서의 주거서비스 제공(2015~현재)
- (서비스 대상) 주거생활지원센터-29호 32명 / 지원주택-24호 25명 / 기타(체험홈)-4호 8명
- (조직) 센터장, 실무총괄 1명, 슈퍼바이저 3명, 주거코디네이터 11명, 주거코치 17명
- (특이사항) 재가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주거생활지원센터'와 SH 공사의 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를 접목한 '지원주택' 사업 운영 중
- (성과) 3년간 50여명의 자립체험과 30여명의 독립 지원

분류	체험형 지원주택	자가형 통합지원서비스
대상	1년 이내 지역사회 내 독립실행 계획이 있는 서울시 거주 성인발달장애인	현재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성인발달장애인
주택소유	서울시(운영기관에 무상임대)	개인(매매, 전세, 월세, 임대주택 등)
이용료	무료(개인 생활비 및 공과금 개인부담)	
지원방식	숙직인력 배치를 통한 상시지원	개인별 특성 및 정도에 따른 개별 방문지원
운영현황	총 4호 (1호당 2인 거주)	40호 내외
이용기간	입주 후 1년 이내	개인별 상이
지원서비스	· 개인별 주거지원서비스 계획에 따른 통합적인 독립생활지원 실행 · 1인 1실 사용원칙, 독립 공간에서의 생활 지원 · 자기결정에 의한 개인별 생활패턴형성 · 지역사회 내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 알선	· 개인별 독립상황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지원 ·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간의 자조모임 지원

-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22~) 통해 사례관리사 배치 및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추진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주거+복지서비스 결합>

- (개념) 공공임대·매입임대 등을 통해 탈시설 이후 주거 제공 및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131호**(‘19년 68호, ‘20년 62호), ‘21년 예산 3,821백만원(시비 100%)
- (주거유지서비스) 입주지원·상담, 주택시설관리, 공과금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의료·건강관리·취업 등 사회서비스 연계 관리
- (인력배치) 주거코디네이터 1: 장애인 6

◇ **가사·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 지역 바우처 사업 등의 대상·규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서비스 연계 강화

▶ **지역자율형투자사업 가사·식사지원 바우처 현황**

- ① **(노인대상 식사·영양 시범사업)**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 (시범사업지역·기간) 통합돌봄선도사업 4개 지역/ '20.7월 ~ '21.6월
 - (지원대상) 거동불편·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지원내용) 사전검사(식습관·건강), 식사배달(주3~5회), 영양관리(월1회)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 수급자·차상위 계층 장애인·중증질환·한부모가정 등
 - (지원내용) **요양보호사 파견** → 신체수발·가사·일상생활지원

3-3 재가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백 방지

◇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후견·소득(일자리)·건강관리 등 빈틈없는 재가서비스 연계

◇ [후견지정] 후견인 양성 및 전문성·지속성 강화

- 무연고·중증발달장애인 거주전환 시 주택계약·병원이용 등 후견 지정 필요
 - * 거주시설 무연고자 비율 28%, 다만 평균 거주기간이 18.9년으로 입소 이후 연고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실제 무연고 비율을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공공후견제도 운영 중에 있으나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지정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활용 한계
 - * ('20년) 공공후견인 643명, 피후견인 1,006명 지원/후견인 후보자 1,537명 양성(교육)
- 퇴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후견인 발굴·교육참여 확대하고 후견 법인을 통해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후견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
 -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 고시」에 의거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견법인으로 지정('20), 법률전문성 보완 필요

◇ [소득·일자리]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및 근로소득 공제 등 장애인 생활 보장 강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22) 통해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既 폐지('20.1~)
 - 장애인수급자가 소득활동 시 근로소득 공제 혜택* 부여 및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별도가구인정 등 소득보장 지원
 - * 등록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50% 추가공제, 그 외 소득은 30% 소득공제 부여

- **(장애인연금·수당)**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 *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70%,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월 최대 30~38만원
 - ** (장애수당) 중증이 아닌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월 2 또는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의 탈시설 시 지역 내 독립생활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연금과(월 30→38만 원) 장애수당(월 2→4만원) 인상하여 지급 中
- **(장애인고용)**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간 고용 촉진 및 공공 선도 역할 강화
 -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훈련-취업 연계프로그램 확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등 추진
 - * 현재 3.4%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고용의무 전면 적용 추진
- **(직접일자리)** 장애인 직접일 자리를 지속적으로 매년 2,500개씩 확대*
 - * ('18.) 1만7천명 → ('19.) 1만9천명 → ('20.) 2만2천명 → ('21.) 2만4천명 → ('22.) 2만7천명(목표)
 -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민간취업 연계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 [건강] 방문건강관리·주치의 등 재가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 **(방문건강관리)**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관리 위해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 지원 中
 - * ('18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83%(비장애인 46.5%), 고혈압·관절염 순
 - ** 現 방문건강관리 지원대상: ①65세 이상 노인, ②수급자·차상위 계층, ③독거노인·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조손가족 등, ④만성질환 위험군·장애인·재가암환자
 -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지표 개선(노인가구 신규등록 실적→노인+장애인 신규등록)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 확대 검토
 - * ('20년 운영 실적) 노인가구 78.34%(87만9천가구), 비노인가구 21.6%(24만2천가구)

- **(건강주치의 연계)** 시설 퇴소 시, 거주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공백 방지
 -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참여 의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 대상 **고혈압·당뇨병 검사 제공***
 - * (맞춤형 검진바우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장애인 환자 대상 '고혈압·당뇨(지질검사, 요 일반검사 등) 검사 바우처 제공 (장애인 비용 부담 無)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통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간호 제공**
 - * 주치의·간호사가 찾아가는 **방문의료(방문진료+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연 12회→ 18회) 추진
 - ** 별도 행위(혈액·뇨검사, 소독처치, 주사제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 I** 신설 통해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별도 행위에 대한 **장애인 본인부담률 경감** (30%→10%, '21.9월~)
- '진료 의뢰·회송 수가' 연계 통해 시설 퇴소 장애인의 건강주치의와 종합병원 간 진료 정보 공유 활성화

◇ **[가족지원]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완화 → 시설입소 예방**

- **(주간활동서비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연계
 - * 낮시간 경제 활동이나 사회참여가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이용권(바우처)** 제공하여 낮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 **(돌봄지원)** 장애아동 대상 돌봄·양육 지원 확대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돌봄시간 단계적 확대
 - * 지원 인원(명) : ('17~'18) 3,725 → ('19~'21) 4,005 → ('22) 5,005명(목표)
 - 연간 지원시간 : ('17) 480 → ('18) 528 → ('19) 600 → ('20~'21) 720 → ('22) 840(목표)
 - **보호자 돌봄 부재(경조사·입원·출장 등) 등으로 일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단기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시보호 강화**
 - * (제주) 보호자의 긴급사유 발생 시 1회 1일 ~15일 이내 단기간 보호서비스 제공

과제 4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

◇ 민간 전달체계 정비 및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민간) 중앙-광역단위 지원기관 설치 및 기초 전달체계 정비

- (중앙)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지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1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21.8월 중 개소,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정책 지원 총괄
- (광역) 광역단위 종합적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자체 운영 센터* 효과성을 분석·검증하여 표준모델 마련, 他 지자체 공유·확산
 - 사회서비스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 광역 시도) 등 광역단위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모델 구축

* 서울시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 부산시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등
- (기초) 거주시설 내 자립지원팀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탈시설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운영 실태조사 및 선도모델 마련

* '20년 말 기준 전국 260개소(국비지원 75개소, 지방비 185개소)

 - 동료 상담에 기반한 탈시설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적응훈련 지원, 지원주택 운영 등 전문 지원기관으로 전환 모색

◇ (공공)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 강화

- (중앙부처) 장애인정책조정 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부·기재부·국토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 기구 운영
- * 장애인 정책관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전문분과위 운영 중('18~)

- (광역) 지역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군구 간 자원연계, 단위시설 지역사회 전환 등 총괄
-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사업 담당부서·읍면동 담당자 민간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 운영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및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심층 사례관리 등 진행
- * 통합돌봄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담당부서 중심 진행

[시군구 부서별 역할]

부서	역할
통합돌봄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장애인을 중점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 사례회의 운영 · 탈시설 장애인 통합평가 및 서비스 지원 총괄 · 장애부서 담당 서비스 외 타 서비스(주거·보건의료·지역바우처 등) 연계 총괄
장애인사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단위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계획 이행 총괄 ·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서비스 민간전달체계 서비스 지원 연계 · 장애등록·활동지원급여·장애연금 등 각종서비스 지원 결정

- (읍·면·동)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통해 서비스 정보 통합안내, 서비스 신청(민원) 접수 및 공공서비스 전달 등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지원 전달체계]



V. 이행기 거주시설 변환

과제 1 과도기 자립촉진을 위한 거주시설 변환

1-1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이용·재이용 강화

◇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우선하도록 시설운영·이용기준 제한

◇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 장애인복지법 개정하여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지원주택 등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신설 명시

장애인복지법(변경 전)	변경 후
제59조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59조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거주시설 이용·재이용 기준 강화

-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 강제 입·퇴소 및 강제 전원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문제 지속 제기*에 따른 절차 강화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강제퇴소 및 전원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퇴소 절차 개정 권고(인권위, '19.10월)

- (경과) '19년 이전 시설 자체 입소 판정 방식* "(필수)종합조사표 + (필요한 경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20년)

* 수급여부 및 장애정도만을 토대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 (향후) 지역 내 사례회의를 통한 종합적 판정방식으로 절차를 강화하면서,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으로 이용 대상자 기준 강화

* (개선안) '최중증 장애인 중심(대상)+지역사례회의(절차)' 중심으로 이용절차기준 강화

분류	지원 유형
ADL 지원	· 음식섭취, 누운자세, 다른곳 옮겨 앉기, 앉는 자세 유지, 실내이동, 대변·소변 등 복합·전적인 지원 필요
인지행동 지원	· 자해·타해·성적행동 등으로 복합·전적인 지원 필요
의료적 지원	· 면역체계 손상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의 보호, 발작, 누설 치술, 구강 교정, 삽관, 산소치료, 자세배농 등 복합·전적 지원 필요

1-2 거주시설 단위 지역사회 전환 지원

◇ 희망 거주시설 중심으로 '시설 보호 →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및 서비스 지원'으로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추진

◇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 거주장애인 보호 중심 → 해당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전환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8월개소) 중심 컨설팅 사업 추진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시범 사업 추진('21~)]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과정의 정책적 과제 진단 및 전환 지원 매뉴얼 마련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 거주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있는 시설 4개소를 선정, 3차년에 걸쳐 전환 과정을 지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변호사·LH담당자 등 지역별 컨설팅단 구성 ■ 거주시설 중심으로 컨설팅단과 협력하여 전환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장애인 지역사회 주거마련 및 서비스 연계 법인전환 및 종사자 고용 승계 등 ■ LH 토지 비축용 자산매입 컨설팅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와 협력하여 시설자산(토지·건축물) 매입 후 건물개조, 철거 및 신규주택 건설 등 시설자산 활용 방안 컨설팅

○ 시설운영 중단을 희망할 경우 'LH 토지비축용 자산매입' 제도 등 토지·건물 활용방안 컨설팅 연계

* (LH 일반비축토지매입제도)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입하여, 공공개발 사업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해당 토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

▶ 서울시 '교남 소망의 집' 운영사례

- (개요) 서울 강서구 소재 지적장애인 시설(82년 개원)
- (거주자) 총 52명(시설 내 24인, 시설 밖 28인), 시설 밖 거주자 중 중증장애인 24명, 경증장애인 4명
- (조직) 주거지원부(생활지원,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부, 서비스기획부
- (특이사항) 시설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운영(15), 탈시설 독립세대·자립지원형 그룹홈훈련형 체험홈 등에 대해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 (성과) '00년~'20년 68%(63명) 장애인 지역사회로 이전(총 23세대 92명 중 체험홈 29명, 공동생활가정 24명, 결혼가정 3세대 6명, 1인독립세대 4명 등)

○ 자립 단계별 서비스 제공 유형('21년)

분류	중증 거주형	중증 다세대 생활형	자립훈련지원형	자립지원형	자립세대
거주 유형	시설 거주	다세대 주택(체험홈)	체험홈	그룹홈	자가주택(퇴소)
관리 인원	시설정원			시설 정원 외	
인원	24명	13명	15명	24명	9명
규모	4개 유니트	6세대	4세대	5세대	·1인 독립 5세대 ·결혼가구 2세대
서비스	·기초생활, 교육 ·비언어적 의사소통 지원	·기초 가사생활 ·지역사회 탐색·이용 ·직업탐색	·지역사회 이용 ·생활기술 및 가사도구 사용 ·직업탐색·고용지원 ·여가·문화활동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역사회 자조모임 등 대인관계 형성 ·근로활동 ·여가·문화활동	·안정된 자립생활 촉진 ·지역사회 정보 제공·분석 ·가정경제관리지원

◇ 시설종사자 재취업·고용연계 지원

○ (현황) 집단 거주시설(단기·공동 제외) 종사자는 약 16천명, 이 중 62%는 생활지도원으로 거주장애인 식사·위생관리·투약·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 종사자 구성(16천명): 생활지도원 61.9%(1만명), 조리원 8.1%(13백명), 간호사 3.8%(6백명) 순

○ (지원)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전환대상 기관 종사자 욕구과약·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 교육과정 개발·운영*, 취업 알선 등 지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해 신규 교육과정 개발·교육지원

1-3 단기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 기능 정상화

◇ 유형별 시설운영 고유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시설 점검 및 운영기준 정비

◇ [단기거주시설] 일시·긴급보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정비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긴급 일시보호 필요 등에 대비하여 단기간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단기거주시설 운영 중('20년, 159개소/정원 최소 10명~최대 30명)
 - * 이용기간: 30일 기본, 필요시 변경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 시 시군구 승인 필요
- 일시·긴급보호라는 운영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용 장애인의 83.4%가 1년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등 장기거주시설과 기능 혼재
 - * ('20년 단기거주시설 실태조사) 1년 미만 17.6% 1년~5년 38.9% 5년~10년 29.8% 10년 이상 14.7%
- 단기거주시설 운영점검 등을 통해 시설 유형 전환·규정 현실화 등을 통한 기능 정상화 추진
- 아울러 다수의 단기거주시설이 서울·경기·대전에(54.6%) 집중되는 등 지역적 불균형 → 서비스 이용에 제약
 - * (시도별 시설 수) 서울(43개소) > 경기(25개소), 대전(19개소) 순 부산·대구·전북 등은 2~3개소 운영
-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허용 검토

◇ [공동생활가정] 유형 다양화 및 거주자 중심으로 운영 개선

-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독립생활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대안적 주거형태에 해당 → 대규모 거주시설과 다른 운영기준* 적용
 - * 일반생계급여 지급, 주간보호서비스·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가능 등
 - ** 이용자의 80%가 낮시간 외부활동, 개인신변처리, 의사소통 가능 ('20년 실태조사)

- (현황) 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거주인 4인당 종사자 1인), 공동생활 규율에 따른 거주인 자기결정 제약 등
- (향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연령대별(아동·고령)·장애 중증도별로 공동생활가정 운영 유형 다양화 → 인력배치·운영 기준 등 차등 적용

[중증도별 공동생활가정 운영모델(안)]

	독립형/표준형	간접 지원	집중 지원
지원 기준	·자립경험 축적되어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	·자립경험 축적 증으로 훈련이 필요한 경우	·중증·도전적 행동 등으로 집중 지원 필요
지원서비스	·금전관리 등 자립생활 간접지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중심 지원	·낮시간 활동 기획 ·주치의 등 의료연계
지원 형태	·주 2~3회 방문 지원	·출·퇴근	·상주근무(교대근무)
인력 기준 (거주인 4인 당)	·0.5인 이하	·1인 이상	·2인 이상

과제 2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 인권 보장 중심 시설 운영

2-1 시설변환: 당사자 중심 · 지역개방 · 개별화된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설 폐쇄성·획일성을 해소하고 당사자 중심(Person-Centered)으로 거주 환경 개선

[거주시설 운영 방식 변화 방안]

재산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연금·수당 등 금전 직접관리 원칙 준수▪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형태로 시설생계비 본인 수령·관리
건물과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아파트 등 가정집 형태로 변경▪ 1인 1실 형태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개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과 교류프로그램 운영▪ 거주전환 희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장애정도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개정)

◇ 개인 재산 직접 관리 원칙 보장

- (금전관리) 시설장애인에 장애인연금(월 30만원)·장애수당(월 2만원) 등 지급 중
 - 시설 직원의 금전 관리 개입 비중이 높음(75.9%) → 직접 관리 원칙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 강화
 - * 금전관리 주체: 시설직원 48.9%, 본인+시설직원 27%, 본인 18% 등('20년 전수조사)
- (생계급여) 시설 거주 장애인에 식비·의류비·취사용 연료비 등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보장시설에 지급하고 있음
 - * '21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256,267원
 - 시설거주자는 '용돈'으로 시설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거나 이조차 받지 못하는 등 생계급여 주체로서 급여사용 한계
 - * 공동생활가정의 거주자의 경우 일반수급자로 생계급여 지급(1인가구 548,349원)
 - ** 시설장애인에도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수급자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입금 원칙

- 전체 보장시설에(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별급여 전환 검토

* 개별급여 전환은 전 보장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

▶ **SRC 보듬터 운영사례** (경기도 광주위치, 서울시 거주시설)

- 체험홈 이용 장애인에(10명/전체 57명) 대한 생계급여 본인지급(월 263,838원)
- 그 외 시설거주 장애인에 간식비·피복비 등 월 47천원 지급

◇ **사생활이 보호되는 건물·공간 마련**

- 집단 거주 시설의 경우 사생활 보호 및 일상생활 자율성 일부 제한
 - 시설 기능보강, 지역사회 거주공간 확보 등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환경의 거주공간 개선 필요
 - * 생활실 평균 거주인원 4.7명, 생활실 당 화장실 평균 1개, 생활실당 행동지원 필요 장애인(자해·타해·성적·집착행동 등) 평균 1.6명, 30년 이상 노후화된 집단거주시설 95개소
- 개인의 사생활·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 거주공간 개념 확대
 - 단일건물 전제한 시설요건→ 아파트형·빌라형·단독주택 등 여러 공간을 합친 거주공간도 시설 유형으로 인정
 -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소공간인 유닛(unit)* 단위로 기준인원·필요설비 등을 정하고 유닛이 합쳐 나가는 형태로 시설 설비
 - * 침실 거실(휴게실), 화장실(목욕실)에 대한 최소기준 마련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검토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 거주시설은 24시간 요양·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 필요

- 서비스 욕구조사표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별 지원 강도에 따라 인력 배치기준·서비스 내용 등 마련 추진
 - 시설유형·이용자 특성이(장애유형·생애주기 등) 반영되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및 인력배치기준 등 개선

[現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거주자:생활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사회복지사업안내
10:1	18세 이상 성인	지체·청각·언어 장애인
5:1	아동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시각장애인
4:1	시각장애인	아동장애인
3:1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
4.7:2	-	중증장애인, 영유아

< 시설 공간 개선 사례 >

□ 부산 사상구 '라온누리' 거주시설

- (개요) 부산 사상구 소재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5년 개원)
- (거주자) 총 30명 (총 8개홈:1홈(아파트) 3-4명 거주)
- (조직) 커뮤니티센터에서(사무동) 컨트롤타워 역할
 - 조리원, 위생원, 물리치료사 등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생활 지원교사가 각 홈에 배치되어 자립생활 지원
- (특이사항) **일반 주거지역에 여러 개의 아파트(홈)가 결합된 형태**로 하나의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설치 운영 (총 9개 : 사무동 1개, 거주홈 8개)
 - 1인실 15개, 2인실 8개로 사생활과 인권이 존중된 주거환경 조성
- (주거지원 유형)



서비스 유형	자립지원팀		자립정착팀	
	돌봄홈	자립지원홈	자립훈련홈	독립(체험)홈
홈 운영현황	1개 홈 (남자)	4개 홈 (남자2개, 여자2개)	2개 홈 (남자1개, 여자1개)	1개 홈 (남자)
대상자	고령, 중증발달장애인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희망자	지역사회 완전한 독립 희망자	독립생활에 대한 체험 희망자
주요지원 서비스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자립생활 전반)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전반의 자립지원	자립을 목표로 심화된 자립훈련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립생활기술 집중)	방문순회서비스로 독립생활을 경험할수 있도록 지원
낮시간 활동현황	자체 의미 있는 낮활동 참여	일반직장, 근로(보호) 작업장, 낮활동 참여	일반직장	

지역사회 독립

2-2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시설입소·거주생활 전반에 걸쳐 당사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단호한 조치

◇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체계 강화

○ 법인대표, 시설장 및 종사자 관리 강화

- (교육 강화)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대표, 시설장에 불이익 처분 근거 마련 등 법인대표 및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 (취업 제한)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장애인복지법 개정 '21.6.30.시행>

○ 거주시설 내 인권 상황 점검 체계 구축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위해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의거 시설 내 거주 장애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 운영 중, 종사자보호자인권전문가로 구성(5~11인),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운영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추진

◇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 (one strike-out)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발생 장애인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강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 인권침해 3회 발생 시 시설폐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1회 발생 시 시설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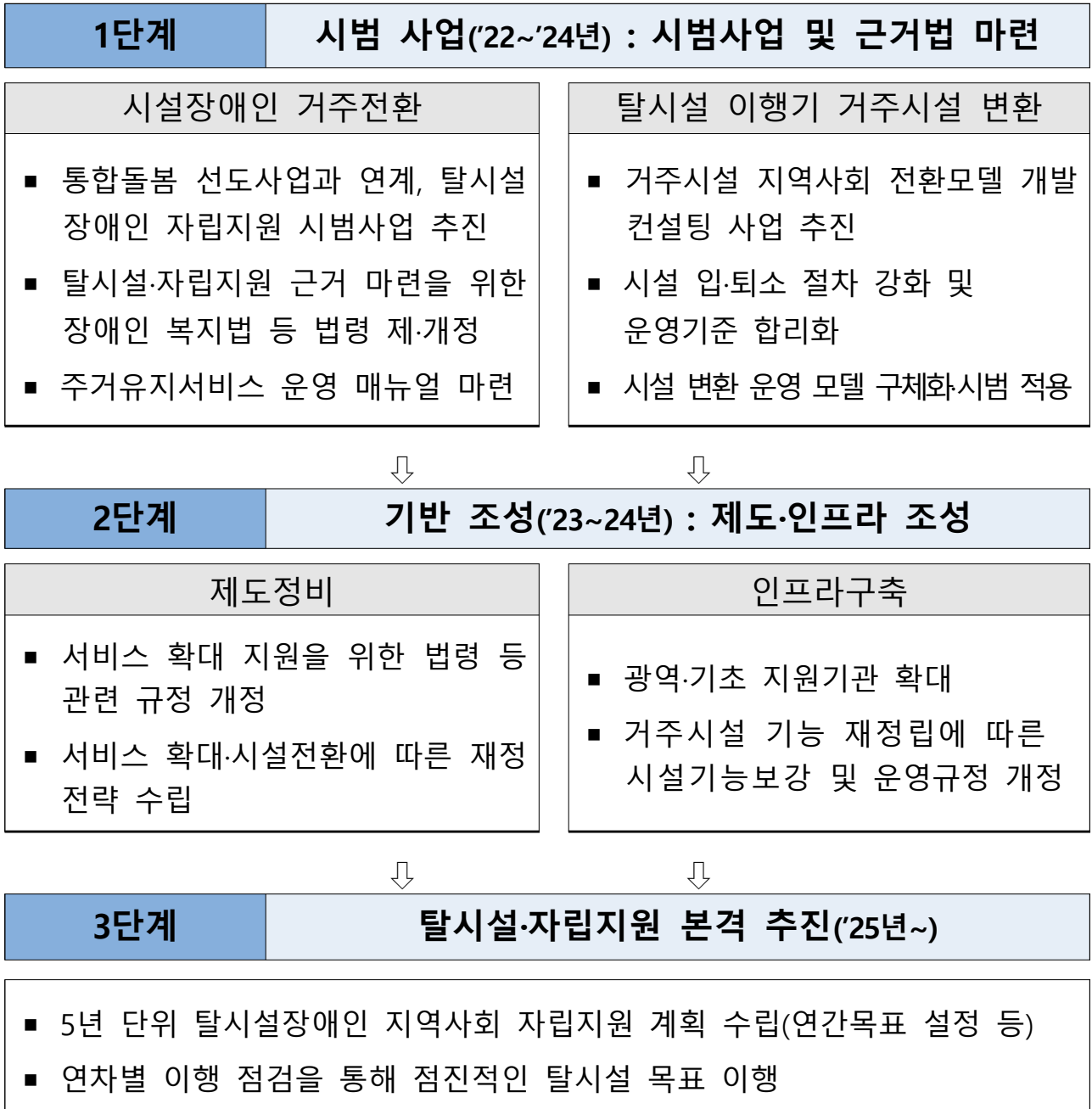
○ (지역사회 전환) 인권 침해 시설은 시설단위 지역사회 전환 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사실상 시설운동을 중단하도록 조치

- (운영비 지원 중단)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설 기능보강 지원 제외 → 시설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실효적 행정제재 개선
- 운영비 지원 중단에 앞서 해당 시설 거주자의 일시적 전원·지역 사회 거주전환 지원 등 조치 선행

[인권침해 시설 제재강화 조치]

	변경 전	변경 후												
시설 폐쇄	·시설 이용자에 대한 <u>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u>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 또는 시설종사자에 의해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 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장복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1차 위반</td> <td style="width: 33%;">2차 위반</td> <td style="width: 33%;">3차 위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개선명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장교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폐쇄</td> </tr> </table>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1차 위반</td> <td style="width: 33%;">2차 위반</td> <td style="width: 33%;">3차 위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폐쇄</td> <td></td> <td></td> </tr> </table>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폐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폐쇄														
국고 지원	기능보강 지원 중단	운영비·인건비 지원 중단												

VI. 단계적 추진 방향



②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1]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21년~)

- (목적) 거주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있는 시설 4개소를 선정, 3차년에 걸쳐 전환 과정을 지원하여 향후 거주시설 전환 추진 모델 개발
 -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8월개소) 시범사업 추진, '21년 사업예산 2억원
 - '시설 전환의지+지자체 지원'을 기반으로 단계적·안정적 전환 추진

[시범사업 2]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22년~)

- (목적)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전·후 연계하여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
- (대상지역) 통합돌봄 선도사업('19~) 등과 연계하여 대상지역 결정
- (지원내역)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건강검진비 등 지원 검토

③ 탈시설·자립지원 법적근거 마련

- 탈시설·자립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추진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 주요내용>

①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권리 보장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다른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보장

②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주택의 보급·개선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요 아젠다로 명시

③ 장애인개발원 개편

- 現 장애인개발원이 연구·평가·모니터링 등 정책지원 기능 수행하도록 핵심 기능을 전환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 시설장애인에 대해 정기적인 자립지원조사 결과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 등 거주시설 퇴소지원 대상 선정
- 초기상담·정보제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퇴소지원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이행
- 주택 및 주거서비스, 활동지원·건강관리 등 지역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②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 전문서비스 지원기관·지원 주택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시설 설치 금지

③ 장애인 거주시설 명칭변경 →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 기관'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체성 강화를 위해 법률상 '거주시설' 용어를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

④ 탈시설장애인 지원기관 운영근거 명시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등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중앙·지방 기관 운영 근거

④ 모델구축·제도개선 위한 연구 사업 추진

① 시범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재정 전략 수립

- 시범사업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 생활변화·만족도·연차별 서비스 이용추이 분석 등 시범사업 평가
- 서비스 이용추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모색

② 탈시설·자립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

- 지역 여건·공급기관 특성 등을 고려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모델·매뉴얼 마련
- 탈시설 초기 필요 자립지원 서비스 유형·수요 등
- 탈시설 장애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③ 탈시설·자립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 광역단위 지원 센터 운영 효과성 분석 및 표준모델 마련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역장애인 자립 지원 기관으로 선도 운영모델 개발
- 주거유지서비스 등 신규서비스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④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 생계급여 개별급여 전환 시 전체 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 인력배치·공간 설계 등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연구
- 단기·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

2. ('23~'24년) 제도·인프라 정비

-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
 - 시범 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사업 지침 개정 추진
- 통합지원 기관 등 인프라 구축 및 시설변환에 따른 시설운영정비
 - 탈시설 지원기관의 운영 모델 개발에 따른 지역 확산, 거주시설 기능 재정립에 따른 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규정 개정 등

2. ('25년~) 탈시설 본격 추진

- 5년 단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 추진

VII. 정책 효과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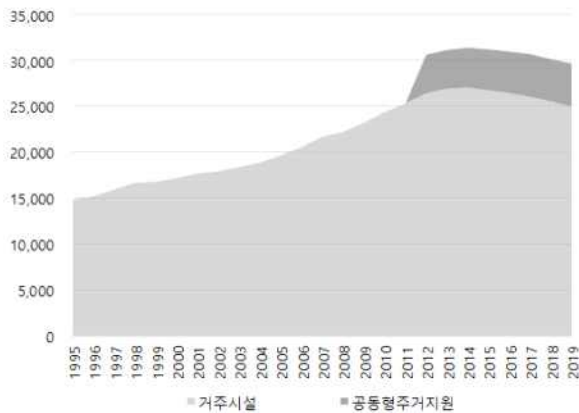
□ 탈시설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25년부터 연간 740여명 지역사회 거주전환 시 '41년*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

* 시설거주 장애인(튜브섭식 등 1인 단독거주가 어려운 장애인)은 약 22백명 수준으로 감소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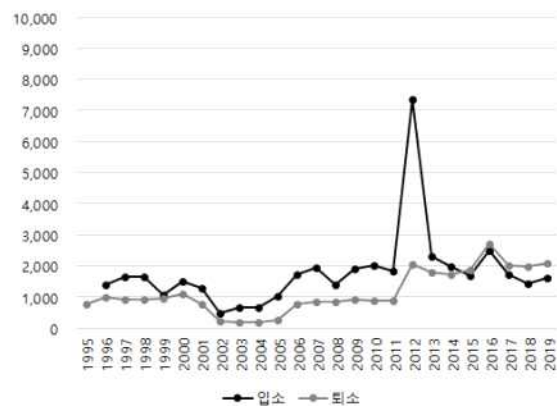
□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 연간 입·퇴소 추이

○ 시설 거주장애인 규모는 '14년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5년부터 퇴소자 수가 입소자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

<거주장애인 규모 변화>



<거주시설 전체 입·퇴소자 규모>



* 공동형 주거지원: 단기+공동생활가정, '12년 단기·공동생활가정 → 거주시설 편입

연간 입퇴소 추이

	입소인원	퇴소인원				
		시설퇴소인원	연고자인도	취업	사망	기타
2014	1,974	1,720	1,071	95	249	305
2015	1,704	1,888	1,273	86	267	262
2016	2,487	2,729	2,009	68	274	378
2017	1,721	2,008	1,429	42	244	293
2018	1,429	1,970	1,295	61	262	352
2019	1,611	2,101	1,380	73	251	397

* 입소자: 타기관에서 전원한 자를 제외하여 재산출(입소자 = 총거주인 - 총거주인-1 + 퇴소자)
퇴소자 = 연고자 인도+취업+사망+기타 (타기관 전원 제외)

□ 정책 개입에 따른 거주시설 장애인 규모변화 추계

- 정책 개입 후 최초 5년간 연간 740여명* 지역사회 거주지원 필요, 연간 지원량 규모는 후반기로 갈수록 감소

* (산출근거) 자연예측치보다 탈시설 장애인 수 연간 20% 증가, 거주시설 입소자 50% 감소 가정(단기·공동생활가정 제외)

- 튜브섭식 등 1인단독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여 전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동거주 수요 가정 시 '41년 22백명 거주예측

* 정책 미개입 시 '41년 시설거주는 12천 3백명 수준

정책개입에 따른 거주시설 변화 추이

연도	연말 누적인원				연평균 증감인원		
	거주시설 (전문서비스)	공동형 주거	개별형 주거	계	거주시설 (전문서비스)	공동형 주거	개별형 주거
2025	20,120	5,436	394	25,949	-	-	-
2030	13,384	7,393	2,159	22,936	-1,347	391	353
2035	7,714	8,986	3,626	20,327	-1,134	319	293
2040	3,025	10,287	4,847	18,159	-938	260	244
2041	2,193	10,517	5,065	17,775	-832	230	218



VIII.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1.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과제 1】 개인·시설 단위 탈시설 지원대상 발굴·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조사·신청 제도 운영 ■ 인권침해 시설·대규모 시설 지역사회 전환 ■ 장애아동 가정형 보호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개정 등 컨설팅 사업 사업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지속 지속
【과제 2】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자립경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거주자 자립의욕·역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에 거주자 자립지원 전담조직 구성 - 징검다리형 자립체험홈 지원 ■ 지역사회 거주전환 초기 집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전환 초기 집중 사례관리 - 장애아동 자립수당 지급 등 경제적 지원 강화 - 정착 초기 한시적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개정 실태조사 등 시범사업 등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시범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 지속 지속 ~'24 지속
【과제 3】 안심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 -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연계 협력사업 확대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거유지·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지원 - 가사·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 재가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백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 양성 및 전문성·지속성 강화 -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재가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계속 사업 계속 시범사업 시범사업 사업계속·확대 사업계속·확대 사업계속·확대 사업계속·확대 사업계속·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	------	----

【과제 4】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광역단위 지원기관 설치 및 기초 전달체계 정비 ■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 강화 	<p>중앙센터 설치, 모델구축 등 시범사업</p>	<p>~'24 지속</p>
--	---------------------------------	--------------------

2. 이행기 거주시설 변환

【과제 1】 과도기 자립촉진을 위한 거주시설 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이용·재이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거주시설 이용·재이용 기준 강화 ■ 거주시설 단위 지역사회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시설종사자 재취업·고용연계 지원 ■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기능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긴급보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정비 유형 다양화 및 거주자 중심으로 운영 개선 	<p>법령개정 지침개정 시범사업 시범사업 교육과정 개발</p> <p>실태조사 및 지침개정 등 모델 개발, 지침개정 등</p>	<p>~'24 ~'22 ~'24 ~'24 ~'24 ~'24 ~'24</p>
--	---	---

【과제 2】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인권 보장 중심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변환: 당사자 중심·지역개방·개별화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재산 직접 관리 원칙 보장 -사생활이 보호되는 건물·공간 마련 -시설거주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장애유형·장애정도 고려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체계 강화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p>연구용역 등 모델 마련, 시행규칙 개정 등 시범사업, 연구용역 등 모델개발 등</p> <p>실태조사 등 시행령 개정, 지침개정 등</p>	<p>~'24 ~'24 ~'24 ~'24 계속 ~'22</p>
--	---	--